

#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 주 의 요 구

제 목 마약류 양도(반품) 승인 업무 부적정

기 관 명 광주광역시

내 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5호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sup>1)</sup>는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하 “마약류”라 한다)을 양도할 수 없으며, 마약류취급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류를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원소유자 등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반품)하려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승인 없이 마약류를 양도하면 행정처분(업무정지 6개월)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시행일 2012. 6. 8.)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소매업자<sup>2)</sup>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sup>3)</sup>가 마약류도매업자<sup>4)</sup>에게 마약류를 양도(반품)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 취급 권한을 허가 또는 지정받은 자

2)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개설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마약류 조제·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3)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류 투약·제공·처방전 발급하는 자

4)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하려는 경우 그 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으며, 이를 제외한 마약류 양도에 대한 승인 권한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 ○○○○과에서는 마약류 양도 승인 업무를 할 때 마약류소매업자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닌 마약류취급자의 마약류 양도에 대해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승인처리 권한이 없으므로 해당 민원 건에 대한 승인 권한이 있는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이첩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마약류 양도 승인을 신청한 마약류소매업자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위 관서의 승인을 받기 이전에 마약류를 양도(반품)하는 등 법령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 등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2013. 11. 1.부터 2017. 7. 27.까지 위 관서에서 처리한 총 2,853건의 마약류 양도(반품) 승인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붙임]과 같이 마약류소매업자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닌 마약류도매업자의 마약류 양도(반품) 41건에 대하여 승인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그대로 승인 처리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마약류소매업자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처방중단 등의 사유로 위 관서의 승인을 받기 이전에 마약류를 미리 양도(반품)하고, 그 후에 승인을 신청한 5건에 대하여 행정처분 대상 여부를 검토하지 않는 등 마약류 승인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광주광역시장은

[주의] 앞으로 마약류 양도(반품) 승인 업무 시 처리권한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